

『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0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8일

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1960 ~70년대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가치가 국내·외로 재조명 움직임.
-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과 성과 등을 알리고 전시, 체험,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,
- 구미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

- 공 원 명 :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신설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 - 면 적 : 245,697m²
 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
 - 사업시행자 : 경상북도지사

라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구미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,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 사곡동 산33-2번지 일원에 245,697m² 규모로,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을 조성,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기본정신, 성과 등을 알리고, 전시, 체험,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
- 상위계획인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구미시장의 '12. 10. 31일 구미시 공고 제2012 - 1304호로 승인 공고 되었음.
- 또한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에 의하면,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주제공원중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으로 시설세분 분류되어, 도시계획

시설(공원)로 결정되므로,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- 아울러, 공람 공고시 사업지구 편입주민의 조기 보상 요구 등 기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 의 건 서

□ 사업 개요

- 공 원 명 :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신설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 - 면 적 : 245,697m²
 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
 - 사업시행자 : 경상북도지사

□ 의견 사항

- 상위계획인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'12. 10. 31일 구미시 공고 제2012 - 1304호로 승인 공고되었으며,
- 또한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에 의하면,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주제공원중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으로 시설세분 분류되어, 도시계획 시설(공원)로 결정되므로, 도시관리계획에 원안대로 반영함이 타당하며,
- 본 사업 대상지 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, 조기 보상 요구 등 기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.